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8. 14. 선고 2018고단 32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제추행,사기

# 수 위 지 방 법 위 여 주 지 위

판 결

사건 2018고단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강제추행,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유리(기소), 이휘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4.

# 주 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1.항 및 2.항에 대하여 징역 4월,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20:15경 이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27. 03:41경 이천시 E 근처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우리 좋았잖아. 너 되게 맛있었어. 너 상상하면 미칠 거 같아."라는 문자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3. 사기

피고인은 2018. 1.8.23:00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4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에 대한 진술조서
-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 대화내용)
- 1. ] 대화내용 사진
- 1. 사건조회서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1. I의 진술서
- 1. 계산서
- 1. D에 대한 진술조서
-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죄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죄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음란)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 종전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I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1.항 및 2.항 범죄는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우인성